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Contents

1부 개회식

인사말: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
김종민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2부 토론회

좌 장: 한 권 | 제주도의회 4·3 특위 위원장 |

- 05 • 발 제: 발제 22대 총선 4·3 공약 현황 및 향후 4·3 특별법 개정 과제
- 고성만 | 제주대학교 교수 |

토론자

- 21 • 고의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25 •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
29 • 양성주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
33 • 이상희 |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변호사 |
37 • 김동현 | 제주민예총 이사장 |
41 • 좌광일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발제

22대 총선 공약을 통해 본 4·3 특별법 개정 과제

고성만 | 제주대학교 교수 |

22대 총선 공약을 통해 본 4·3특별법 개정 과제

고성만
(제주대 사회학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별 4·3 공약

	주요 내용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희생자→유족) -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구급자) - 진상조사단 권한 강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중앙위→실무위) - 국립 제주4·3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운영 추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왜곡·편향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 '정의' 개정 통한 정명 추진, 정체성 확보 -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근거 마련 - 미군정 책임 규명 위한 외교적 노력 - 종교계 피해 지원 강화 및 4·3 교육 확대
정춘생 (조국혁신당, 비례)	- '정의'(소요사태) 개정 - 왜곡,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마련 - 트라우마센터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제주4·3위원회의 '대정부 7대 건의안' (2003)

- 제주도민과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 ('03, '06, '18, '20 '21)
-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14)
- 진상조사보고서의 교육자료 활용 ('08~)
-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지원 ('03~)
- 유족에 대한 실질적 생계비 지원 ('09~)
-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에 대한 발굴사업 지원 ('04~)
-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시민운동에서 입법운동으로" 4·3의제의 조직화, 이익집단화

선거 과정 혹은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어떠한 "정의 규정"을, 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관한
방향성과 구체적 전략은 생략된 채 선언적 구호로 빛바랄 우려

제주4·3사건(2조1항), 희생자(2조2항), 유족(2조3항),
보상금(2조4항), 보상금 등(2조5항)

심지어 "규정"되지 못한 "정의",
특히 2021년 전부개정으로 인해 등장한 용어가
관념적이고 모호하여 법 조항의 정합성, 실효성을 떨어트림

'가해자'(4조), '공동체'(16, 22조), '트라우마'(23조),
'화해'(4, 16, 18의3조), '상생'(16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4·3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및 유족 결정 간소화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수수로 감면 제도 도입 4·3 트라우마센터 국비 지원 종교계 4·3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지원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픈 과거를 딛고 미래를 지향하는 제주사회 4·3 유족 위한 요양시설 등 복지체계 마련 4·3 고령 유족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 지정 4·3 평화공원의 명실상부한 화해와 치유의 상징장소화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4·3 왜곡 대응 4·3특별법 개정 및 역사 부정 처벌법 제정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추진
개혁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모욕, 4·3 아픔 왜곡 시도 중단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통탄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 왜곡 처벌에 관한 4·3특별법 개정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태도 촉구
조국혁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 폄훼 및 명예 훼손 관련 처벌 규정 신설 4·3 소요사태 등 4·3 법적 정의 및 정명 문제 해결 추진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 규명 필요 4·3트라우마센터 예산 지원 강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2003.10.31)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특별법('00)→보고서('03)→사과('03, '06, '18, '20 '21)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 **무장봉기**
무력충돌 = **무력충돌**
강경진압 = **강경진압**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

“‘정의’ 부분은 정부에 의한 공식 조사 이전에 만들어진 ‘정의’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3이 어떻다는 정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이 소요사태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또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졌다면, 4·3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소요사태로 규정되고 있는 한 진상과 명예가 어떻게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2004년 11월 19일), 양동윤 발언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그 실제적 진실들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또한 입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 후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각종 자료가 다시 발굴되면서 입법 당시와는 다르게 좀 더 사안의 실체에 대하여 접근된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4·3특별법 개정안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성윤, 2006, 「4·3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성격」, 『4·3과 역사』 6, 각, 160쪽

“목적·정의 부분 역시, 이 법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정의에 따라서 이 법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2004년 11월 19일), 강창일 발언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7. 12. 18. 발의>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2020. 07. 27. 발의>

4·3특별법 전부개정 (21.3.)

- 4·3위원회 기능 및 권한, 구성 확대 (추가진상조사 강화)
- '수형자' 명예회복 (직권재심 권고)
- 인지청구의 특례
-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 4·3트라우마 치유사업
-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진상조사 결과 및...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배경과 원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2000년 법 제정 당시에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 간에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는 마지막까지 '논란의 불씨'였다. 그 이후에도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매번 우선 순위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제정법 상의 '소요사태'는 2년 6개월여의 진상조사를 거쳐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기획된 대통령의 발표문에서 이미 '봉기'로 전환된 바 있다.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그 후 수 차례 더 이루어졌지만 '소요사태'로 회귀된 적은 없었다.

7개월간의 법안 심사를 거쳐 2021년 2월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2조(정의)는 개정되지 않았다. 수년간의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이룬 전부개정의 위상과 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의' 조항은 20여 년째 바뀌지 않았고, 1947년 3월 1일과 48년 4월 3일을 전후로 발생한 사건들과 도민들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2000년 제정법의 역사인식을 반영하는 '소요사태'로 규정되게 됐다.

개정법을 21년간의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의미화하고, 특히 '사건의 진상이 충실히 드러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보다 2조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결국 개정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전부개정법은 여전히 '소요사태'를 토대로 뒀으로써 진상규명 운동의 궤적과 성과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해석을 채택해 버리고 말았다. '소요사태'라는 잔재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온 피해자들의 분투와 역사인식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의 사회화가 요원한 우리의 현실, 즉 퇴행을 방증한다.

수 차례의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의’ 조항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법 개정에서 핵심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은 ‘야당과의 이견’ 이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심한 칼질’, ‘정부 쪽의 난색’ 등으로 회고하지만, 그 이유를 단지 외부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

오히려 발의법에서 비중있게 제시됐던 새로운 ‘정의’가 개정법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을 때 질타나 아쉬움, 자성과 성찰을 요청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제기되지 않았던 무반응 현상이 이러한 물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저항’, ‘봉기’라는 2조의 이상과 ‘보상’이라는 16조의 현실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16조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2조의 변혁이 초래할지 모를 불안정성은 제거되어야 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과거사 해결 후속 조치의 최우선 순위로 부상된 상태에서 ‘정의’를 개정하는 데 발생하는 갈등 혹은 지체는 감수될 수 없는 선택지였다. 2000년 제정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20여 년간의 ‘과거청산’ 성과를 반영해 법 조항을 갱신함으로써 사건의 ‘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은 엄중한 현실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무엇보다 16조(보상금) 집행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 했던 것, 즉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고, ‘소요사태’라는 규정이 비록 구시대의 잔재라 하더라도 보상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안건으로 올라서는 안 된다고 본 암묵적인 합의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어둠에서 빛으로’와 같은 구호가 상징하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진보와 발전의 도식 위에서 성공적인 운동 서사를 써 내려가면서도 4·3의 법적 ‘정의’를 20여 년째 바꾸지 않은 현실은 결국 진상규명 운동 추진 세력들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16조의 안정적인 운용을 의식해서 내려진 것이다.



그 점에서 ‘보상금’은 일종의 사고 정지를 반영하게 된 ‘정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됐고, 21년의 시차를 지닌 두 조항이 병존하는 기이한 현상은 ‘4·3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전환점’으로 규정되는 이행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상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또한 47~48년의 ‘저항’과 ‘봉기’를 ‘소요사태’로 회귀시켜 다른 ‘정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이는 4·3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희생자’로 일원화, 균질화하는 한편, ‘희생자’와 ‘희생자 제외대상’으로 위계화, 서열화하는 방식을 고착화한다.

‘저항’과 ‘봉기’가 개정법에 전면화되지 않음으로써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등을 제외 대상으로 특정하는 4·3위원회의 ‘희생자’ 선별 기준도 계속해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조의 성격은 2조에 의해 결정된다. ‘보상금’은 ‘소요사태’라는 ‘사건’의 ‘정의’, 그리고 주민과 토벌대를 일괄하는 ‘희생자’의 ‘정의’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보상금’이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쟁취한 성과인지, 어떠한 ‘정의’에 기반한 것인지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4·3특별법이 2021년에 두 차례 개정되는 동안 16조의 명칭이 ‘위자료 등’에서 ‘보상금’으로 바뀌고, 금액 산정 기준을 비롯하여 신청-심의-지급에 관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표현됐다. 이러한 발 빠른 갱신은 4·3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희생자’ 연대 안에서의 유의미한 전환일 뿐, 위자료든 보상금이든 모두 ‘희생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람을 외부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2000년 제정법은 적용 대상을 4·3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으로 설정했지만, 2021년 전부개정법을 토대로 추진하게 될 보상금 지급은 그 가운데서도 ‘희생자’ 만을 대상으로 특정한다.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보상금을 지급한다’(16조)는 조항은 무장대를 배제해 왔던 과거사 해결 방식이 개정법 이후에도 계승, 심화되는 사태를 예견한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어디까지나 ‘희생자’ 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점에서 법 개정 이후의 ‘과거청산’ 의 시야가 편협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2000년 이후의 4·3운동이 시민운동에서 입법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의제가 조직화되고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는 양상에도 큰 변화를 보였다. 한편, 의제가 법 안팎으로 이분화되면서 입법 과제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안은 논점에서 배제되게 됐다. **역사의 사법화-피해의 위계화, 법의 고도화-의제의 편협화**가 동시에 나타나게 됐다.

20여 년의 역사성을 무색하게 하는 ‘소요사태’, ‘사건’ ‘희생자’ 위에,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가해자’(4조), ‘보상금’(2, 16조 등), ‘공동체’(16, 22조), ‘화해’(4, 16, 18의3조), ‘상생’(16조)이 촉발할 사회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시각과 분석틀이 필요할까.
불완전성을 내재하는 ‘완전한 해결’이 어떠한 상태의 돌이킬 수 없는 마무리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말들은 어쩌면 끝의 서막을 알리는 징후가 되지 않을까.

수백 수천 번 감안하여, 해방정국, 특히 47~48년 제주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소요사태’ 로, 그것을 주도했던 이들을 ‘희생자 제외대상’ 으로 선별하는 합의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소요사태’ 는 왜 발생했는지, 그것이 당시의 점령 정책에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위협적이었고, 결국 그 점령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그로 인한 ‘무력충돌’ 과 ‘진압과정’, ‘희생’ 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제 ‘소요사태’ 와 ‘희생자 제외대상’ 이라는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닫아 두었던 문을 열어야 한다.



22대 국회가 다루어야 할 4·3의제가
 ‘제주4·3사건’ 이후의 피해자를 ‘희생자’에 추가하고,
 뒤늦게 발견된 구금 피해자를 ‘희생자’에 추가하고,
 왜곡·편향·허위 유포를 처벌할 형벌 조항을 추가하고,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재설계하는 일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4·3특별법 제·개정 역사를 복기하며,
 시도해 왔으나 차선 과제로 분류되어 실현되지 못했던
 과업의 목록들을 시급히 재구성할 때다.
 거의 모든 의제가 불안한 2조(정의)와 연동되는 만큼,
 22대 국회가 밀돌을 재구축하는 일에 진지하게
 접근하여 주시길 기대한다.

토론

제주4·3 특별법 개정의 밀돌 재구축을 위한 과제

고익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제주4·3 특별법 개정의 밑돌 재구축을 위한 과제

고의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4·3특별법 제·개정의 역사를 복기하며, 시도해왔으나 차선 과제로 분류되어 실현하지 못했던 과업의 목록들을 시급히 재구성할 때다. 거의 모든 의제가 불안한 제2조(정의) '소요사태'와 연동되는 만큼 22대 국회가 밑돌을 재구축하는 일에 진지하게 접근하여 주길 기대한다.

- 주제발표문 중에서

제주4·3은 지난 76년 동안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또 대통령 공식 사과까지. 제주4·3은 지난 70여 년의 지난한 역사를 거쳐 비로소 희생자 결정에서 보상에까지 이르렀다. 국가의 사과와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법을 통한 보상금 지급은 과거사의 최초 사례로 제주4·3은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가장 선두에 서 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진상조사, 수형자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인지청구의 특례,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은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만하면 제주4·3의 역사적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주4·3 “정명(正名)”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76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한 제주4·3은 도민사회를 넘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름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는 4·3특별법 제2조 정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4·3특별위원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래 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正名)”을 선정하여 활동하였다. 그 일환으로 실시한 ‘제주4·3 정명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4·3의 정명 운동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나¹ 현재, 4·3의 정명으로 적합한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건’으로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다.²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가치중립적인 ‘사건’을 넘어 발발 원인, 배경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이름을 찾는 ‘정명 운동’을 시급히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법 활동을 통해 4·3의 법적 정의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4·3 정명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4·3의 정명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산적하다. 제주4·3의 시작은 1947년 3월 1일이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한반도 38선 이남을 통치했다. 4·3 발발 원인인 1947년 3·1절 기념 대회부터 미군정은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 법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한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군정의 책임 규명은 정명의 선결 과제이다. 미국은 4·3 해결을 위한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보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사과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당시 UN의 역할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주4·3의 국제적 공조 등 인권의 과정에서 국제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명명이 가능하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 등에 필요한 미국의 적극적 책임을 요구하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의회 최초로 의결하였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미국에 직접 방문하여 미국내 동포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다. 도의회의 공식적인 방문으로 동포단체들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연대를 확대하는 기회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공식적이며 외교적인 노력들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추가진상보고서’의 조사 과정이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결과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외교적 노력 확대와 ‘추가진상보고서’의 충실한 결과는 4·3특별법 개정의 밑돌 재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제주 4·3특별법 2조 2항은 희생자의 범위를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에 의해 희생당한 어떤 사람은 희생자로 결정되지만 어떤 사람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희생자라도 그들 사이에 차별은 분명히 존재한다. 제주4·3특별법 어디에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해 구분하는 조항은 없다.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제주4·3 희생자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희생자 범위의 확대’는 ‘정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명운동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다시 재정립되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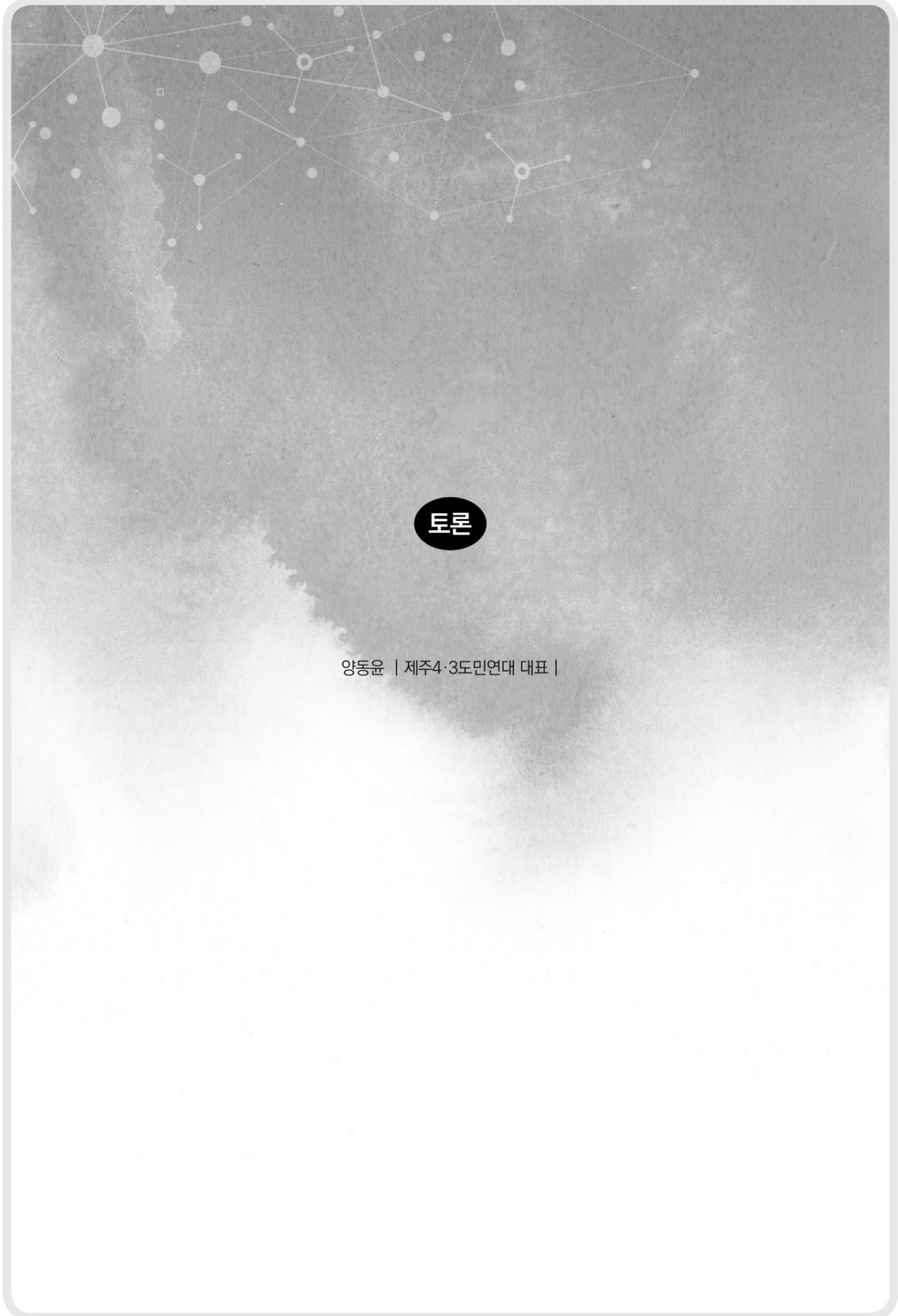
이와 더불어 가해자 처벌에 대한 담론도 이제는 형성되어야 한다. 4·3특별법 제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국가폭력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한다. 제주 4·3을 일으킨 가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2024, 「제주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와 합의」, 일반도민 52.3%, 청소년 60.0%, 유족67.0%, 15쪽
2 위의 책, 일반도민 28.9%, 청소년 49.1%, 유족29.0%, 16쪽

해자와 그들의 위법성을 판단해도 그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어렵겠으나 역사적인 책임을 묻는 정도의 시도는 있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희생자에 대한 위로 및 보상과 함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4·3 특별법의 제개정으로 4·3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 나아가 희생자 명예회복과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까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더 나아가 제주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정명과 추가진상규명, 미국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과, 희생자의 범위 확대, 가해자의 대한 책임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 곧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였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구체적 결과로 입법과정을 통한 걸음 나아가기를 거듭 기대한다.



토론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

MEMO

토론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양성주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양성주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

1980년 후반의 민주화열기에 힘입어 제주4·3에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되어, 4·3 50주년을 맞아서는 입법 활동으로 이어졌고, 2000년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몇 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확대, 평화재단 지원근거마련, 유해발굴 사업이 진행¹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생존희생자와 1세대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생전에 개별배상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4·3유족회를 중심으로 국가배보상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2017년 20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2021년에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다.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희생자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국가보상금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개인별 균등 지급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의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내용에는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조항도 포함이 되었다. 군사재판의 무효선언을 통해 수형인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기를 희망했던 희생자와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추가진상조사, 가족관계 특례, 공동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많은 법률의 내용 변화가 있었다. 이후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보상금액과 지급에 관한 사항과, 가족관계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2024년 5월 현재 가족관계특례 조항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전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지급 중에 있고,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진행 되고 있다. 또 가족관계가 잘못 작성되어 정정이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4·3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사후 양자에 관한 특례조항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2021년에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으로 많은 부분에서 법률적,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고성만교수의 발표처럼 <정의>에 관한 조항은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개정의 필요성은 제기 되었지만 국회통과를 위해서든, 우선순위에 밀려서든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발표자의 말씀처럼 거의 모든 의제가 제2조에 연동이 되는 만큼 80주년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개정이 되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제2조의 조항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개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²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의 4·3특별법에서는 희생자의 결정에서 4·3기간 동안의 사망자, 행방불명인, 수형인, 후유장애인

에 대한 어떠한 배제 조항도 없다.³ 그렇지만 4·3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여전히 희생자의 심사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발표자가 제안한 내용 이외에도 4·3유족회의 입장에서 4·3특별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차별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이다. 5.18특별법에서 이미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5.18사태에 준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왜곡 및 차별에 대해서는 법률적 처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희생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위자료지급 등)가 있어야 한다. 4·3특별법에서는 희생자에 대해 국가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구제조치가 없다. 4·3희생자로 인해 살아남은 가족들은 연좌제와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와 재심재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은 가족들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에 대해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도록 하는 입장이나 10만 명이 넘는 유족들이 모두 재판을 청구소송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4·3희생자 가족들의 피해구제 조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4·3기간에 상관없이 4·3진상규명 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4·3희생자 또는 공헌자로 결어하여야 한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네 번째는 제주국가트라우마센터의 본원설치이다. 현재 준비 중인 제주트라우마센터는 광주본원의 분원으로 준비 중이다. 분원에는 사무실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제주4·3 그리고 강정마을 등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연구, 치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원으로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국가의 책무에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교섭 및 홍보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족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1.>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제주4·3 70년 여름에서 빛으로』, 2017, 제주4·3평화재단, 하나CNC출판
 2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한집13-2, 383]
 결정요지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회의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

양정숙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⁴. 여섯 번째는 4·3유족회의 공법단체의 등록이다.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이 공법단체로써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국가폭력의 희생자의 단체들이 공법단체로 법률에 넣는 것을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4·3유족회의 바람을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여주기를 희망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4·3의 현재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보태어 줄 것을 기대한다. 모든 문제들이 입법을 통해 해결되고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통한 해결의 과정을 도외 시 할 수다고 본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같이 발걸음을 보태어 주시고 또 결과에 대한 평가도 준엄하게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현재 제주대학교의 4·3융합과정의 연구진들의 4·3에 대한 연구과 함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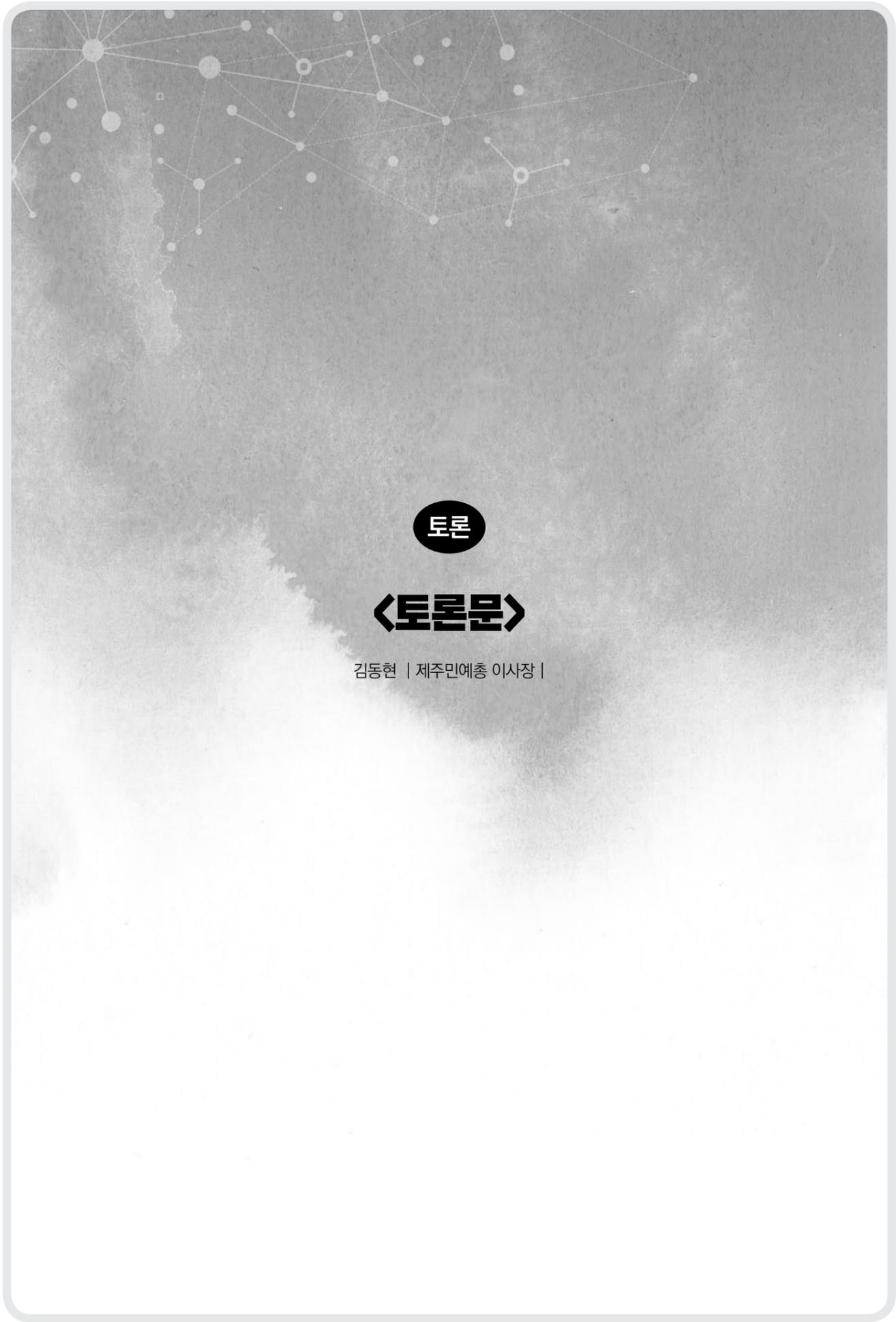
4 『4·3 진상규명 등 국제적 해결방안 모색 길 열리나』, 미디어제주 2023.06.30 기사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416>



토론

이상희 |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변호사 |

MEMO



토론

<토론문>

김동현 | 제주민예총 이사장 |

〈토론문〉

김동현 | 제주민예총 이사장 |

고성만 교수의 문제제기에 동참한다. 제주 4·3 진상규명운동이 입법화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성과 역시 분명하다. 하지만 시민운동의 차원과 입법으로 인한 제도화의 문제는 제주 4·3 진상규명운동사의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것을 고성만 교수는 “4·3 의제의 조직화, 이익집단화”라고 지적했는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 보충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 4·3의 이른바 ‘희생자’, ‘해결’ 담론이 부각되면서 ‘유족 중심주의’가 강화된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프레임 안에서 제주 4·3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결국 고성만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희생자 중심의 피해의 위계화, 의제의 편협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4·3 진상규명 운동이 말 그대로 ‘운동’이라고 할 때 그 운동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지면 관계상 소략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그 자체로 아래로부터의 운동, 시민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실천적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 4·3의 제도화 이후 강화된 유족 중심주의-여기에는 일부 정치화된 유족회 출신 인사들이 한몫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족회의 정치성을 이용한 것이 지난해 있었던 제주 4·3 평화재단의 조례 개정 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제주 4·3 운동 진영의 다양한 운동성을 회피하거나, 굴절시켜 버렸다. 명백한 퇴행이다.

고성만 교수의 법개정과 관련한 지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 2조 정의 조항의 문제는 제도화 이후 제주 4·3의 운동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의 퇴행적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소요사태’라는 용어의 삭제를 포함한 정의 조항에 대한 법 개정은 미룰 수 없다. 특히 2001년 현재의 판결 이후 희생자로 제외된 이들을 여전히 법 외부의 존재로 미뤄둘 수는 없다. 20년이 넘었으니 만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당시 현재는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¹ 현재 2001. 9. 27. 2000헌마238, 2000헌마302,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결행위 등 취소’

1 현재 2001. 9. 27. 2000헌마238, 2000헌마302,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결행위 등 취소’

현재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장 봉기 세력의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에 대한 지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72년 유신 헌법 전문에서야 등장한다. 1948년 제헌헌법과 1954년 개정헌법에는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분단체제와 독재정권이라는 역사성에서 ‘발명’된 것임을 보여준다. 제주 4·3항쟁이 해방기 남북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러한 현재의 규정이 4·3 특별법에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힘들다. 제주 4·3의 제도화가 오히려 법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현실에서 제주 4·3항쟁의 역사적 복원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2000년 제주 4·3특별법 제정 이후 2024년까지 9차례의 개정(이중 전부 개정 1회 포함)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법이 여전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법적 외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외부의 영역은 여전히 법의 이름으로 소환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토론

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좌광일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좌광일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4·3특별법 4·3 정의 조항 수정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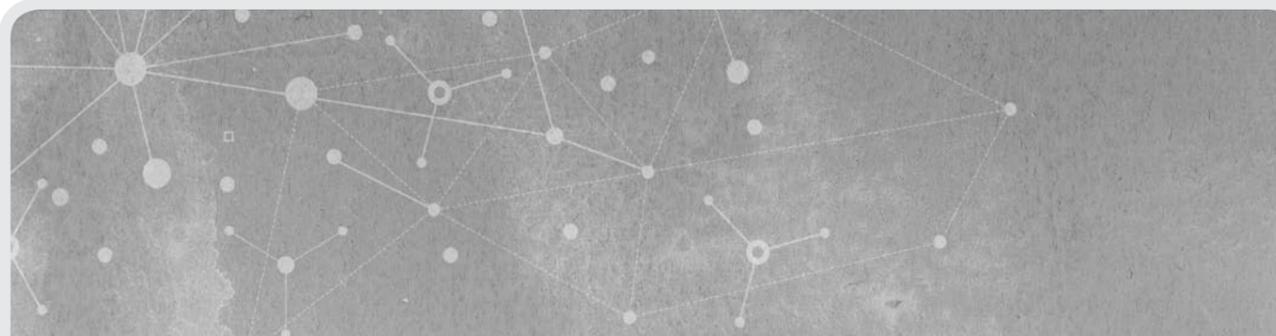
- 4·3특별법 개정 과제 중 하나가 4·3의 정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임. 사실 그동안 수차례 4·3특별법 개정 과정 등을 통해 4·3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논의만 하다 무산됐음.
- 현행 4·3특별법 제2조 1호에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4·3을 여전히 '소요사태'라고 규정하고 있음. "소요사태"라는 잔재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피해자들의 분투와 역사인식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의 사회화가 요원한 우리의 현실, 즉 퇴행을 방증한다"라는 고성만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 4·3 정의 조항에는 주어가 빠져 있음. 누가 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지,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은 누구인지, 누가 진압을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법률 특성상 정의 조항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을 잘 모르는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향후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4·3의 정의 조항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4·3 희생자 범위 확대 의제화

- 4·3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함. 현행 4·3특별법에는 희생자 범위를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법에 명시된 4·3 기간이 지나 폭발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이 있고, 4·3 진압과정 과정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 연좌제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도 있음.
- 이들 모두 4·3 피해자들이지만 희생자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음.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4·3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또한 4·3 당시 많은 사찰이 불에 타고 스님들이 희생되는 등 피해를 입은 불교 등 피해 종교단체들도 특별법에 따른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희생자에 제외된 사람, 즉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자 등을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게 온당한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4·3 미국 책임 규명 필요

- 4·3에 대한 미국 책임 규명도 필요함.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책임 규명과 국제적 해결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미국의 책임을 묻고자 민간 차원에서 지난 2018년 4·3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책임 등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지난해 4·3의 정명 해결과 미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음.
- 국회 차원에서도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음. 양정숙 의원은 미국 책임 규명과 관련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곧 종료될 예정이어서 폐기될 운명임.
-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제주도, 국회,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함.
- 이 밖에 4·3을 왜곡·편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트라우마센터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함.

A network diagram with nodes and connecting lines, overlaid on a dark, textured background.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4호, 2024. 1.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1.>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 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② 국가는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11.>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발간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2.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4.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 11.>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⑧ 제7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 11.>

⑨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1.>
-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 ①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피해신고 등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단체의 협조 의무)

- ①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②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 ①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발간과 국회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 1. 11.>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 ①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30.>

[제목개정 2024. 1. 30.]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특별재심)

- ①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11.]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6조의3(심의·의결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7조(재심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7조의3(지연 이자)

①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호헌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제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보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20조(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제주4·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0.>

③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제목개정 2024. 1. 30.]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사료관 건립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11.]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2. 1. 11.>

부칙 <제20164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청구의 소 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